

# 한말 신용거래 양상에 대한 법적 분석\*

— 구한말민사판결문의 ‘換錢’ 사례를 중심으로 —

김백경\*\*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판결문’에 나타난 換錢 법리
  1. 현대 환어음의 법률관계 概說
  2. 일본의 관습조사에 의해 認定된 事實
  3. 전형적 사례의 분석
  4. ‘판결문’ 속 換錢 관련 주요 빈출 용어의 정리
- III. 「手形條例」와의 比較
  1. 전통적 換錢 관행과 「手形條例」 소정 爲替手形の 비교
  2. 「手形條例」와 일본 「爲替手形約束手形條例」의 비교
- IV. 맺으며

## [국문 요약]

한말 신용거래에서 성행하던 ‘換錢’이란 다른 말로는 ‘換’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 오늘날의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gezogener Wechsel, Tratte, 爲替手形)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근대 이전에는 ‘於音’, ‘魚驗’ 등도 유통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오늘날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eigener Wechsel, 約束手形)과 유사하다. 오늘날의 어음제도는 이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통틀어 규율하고 있다. 어음제도와 같이 신용에 바탕을 둔 상업거래는 경제 발달사에서 最先端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통해 근대적 신용거래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어음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한국에는 開城商人을 위시하여 상업적 신용거래 관행에서 오늘날의 어음에 비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후기와 한말에 성행한 換錢 관행은, ‘구한말민사판결문’을 분석해 보더라도 오늘날의 환어음 법리와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하다. 법률관계의 기본 당사자로 3인이 등장하고,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의뢰한다는 취지도 동일하다. 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이 가

\* 本稿는 韓國法史學會 제119회 정례학술발표회(2016.12.16. 서강대학교) 발표문을 일부 수정·가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ataraxia326@naver.com

지는 要式證券性·提示證券性·相換證券性·文言證券性·指示證券性·資格授與的效力·免責證券性 등의 속성들을 전통적 換錢 관행은 온전히 때로는 부분적으로나마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근대적 환어음 제도의 初期的·萌芽的 성격을 충분히 具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주제어] 換錢, 환어음, 於音, 약속어음, 手形條例, 換簡

## I. 들어가며

本稿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구한말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에서 공개한 1889년부터 1918년까지의 민사판결문 가운데 1895년 4월 22일(漢城裁判所 開國 504년 제72호)부터 1907년 11월 19일(漢城裁判所 隆熙 원년 제411호)까지 선고된 국한문 판결문(이하 ‘판결문’으로 약칭) 총 4,711건 중 이른바 ‘換錢’ 관련 95건<sup>1)</sup>을 대상으로 해당 시기 신용거래 양상에 대해 법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換錢’이란 다른 말로는 ‘換’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 오늘날의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gezogener Wechsel, Tratte, 爲替手形)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근대 이전에는 ‘於音’, ‘魚驗’ 등도 유통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오늘날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eigener Wechsel, 約束手形)과 유사하다. 오늘날의 어음제도는 이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통틀어 규율하고 있다. 어음제도와 같이 신용에 바탕을 둔 상업거래는 경제 발달사에서 最先端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1) 분석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첨언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5년 9월부터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구한말민사판결문’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판결문’의 원문 입력과 번역을 중심으로 當代의 민사판결을 공부하는 모임인데, 매주 1회 참여자 전원으로 이루어지는 윤독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독회에서는 각자 원문 입력과 번역을 담당한 판결문들을 같이 읽으며 상호 교열과 비교 검토를 진행한다. 本稿는 지금까지 이 연구회에서 원문 입력과 번역 및 윤독이 완료된 판결문들을 일단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 그러나 現今의 신용거래 상황에서 어음제도는 점차 그 立地가 좁아지는 추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거래는 신용카드·은행계좌이체·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신종 거래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속어음제도는 머지않은 시일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러나 國際海商去來에서 어음제도는 여전히 그 역할

일본을 통해 근대적 신용거래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어음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한국에는 開城商人을 위시하여 상업적 신용거래 관행에서 오늘날의 어음에 비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시대 상거래에서 어음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柳子厚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40년 『朝鮮貨幣考』라는 저서에서 오늘날의 어음[手形]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換’과 ‘於音’을 소개하며, 그 어원의 유래 및 전통적 화폐경제질서 속 신용거래 관행에서 위 양자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였다.<sup>3)</sup> 아울러 그것이 수 백 년 동안 전통적 신용거래질서에서 통용되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조선 肅宗代부터 松都商人 즉 開城商人을 통해 많은 발전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換’의 어원을 설명하면서는 “종이쪽지인 標를 돈과 換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붙었다”고 언급하는 것이 흥미롭다.<sup>4)</sup> 최근의 연구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고동환과 전성호의 논문이다. 고동환(2010)<sup>5)</sup>은 「중추원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에서 한말에 이르는 기간의 신용거래 발달상을 해명하였는데, 대표적 신용거래의 종류로 於音과 換을 들고 있다. 특히 해당 시기에 六矣塵 役人廳이 오늘날의 어음교환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전성호(2011)<sup>6)</sup>는 開城商人의 후손인 박영진 家에 보존된 1887년부터 1900년까지 14년간의 각종 회계장부에 기입된 어음관계 거래를 분석하여, 해당 시기 開城地方에서의 외상판매 및 단기금융거래에서의 어음유통 양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家의 어음 관련 거래가 가지는 금융적 성격을 선명히 부각시켰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상업사적 관점에서 어음 관행을 조명한 것으로서,

---

이 크고, 최근에는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정 영역에서는 그 위상을 무시할 수 없다. 本稿는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신용거래발달사에서 어음제도의 위치를 조명하려는 취지임을 새삼 밝힌다.

3) 柳子厚, 「어음票에 對하여」, 『朝鮮貨幣考』(理文社, 1940), 260~268면.

4) 柳子厚, 위의 글, 268면.

5) 고동환, 「조선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於音과 換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6) 전성호, 「조선 후기 換·於音 거래 분석(1887-1900)-박영진가 회계장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8(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각종 고문서와 기사자료, 조사자료 등이 그 주된 분석 대상이다. 그러나 어음을 중심으로 한 한말의 신용거래 양상을 당시의 판결문을 소재로 법적 시각에서 연구한 것은 문준영(2011)<sup>7)</sup>이 거의 유일하다. 그는 1908년에서 1910년까지의 京城控訴院 및 京城地方裁判所의 판결원본철에 수록된 판결문을 소재로 하여, 판결에서 언급된 관습의 종류와 내용, 관습에 대한 신·구 재판의 취급 방식, 舊裁判 하에서의 관습의 존재양태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인 법률가들이 장악한 새로운 재판소가 당시 한국의 민사관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취급했는지를 조명하였다. 특히 어음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생동감 있게 부각하였는데, 주로 오늘날의 약속어음과 유사한 ‘於音’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於音의 讓渡 관행인 ‘往踏’<sup>8)</sup>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그러나 換錢 관행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관련하여 간략히 언급할 뿐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本稿는 上述한 바와 같이 한말 특정 시기의 민사판결문을 주된 소재로 삼아, 해당 시기 신용거래 양상을 換錢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약속어음과 유사한 於音 관련 사건은 本稿의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해당 시기는 갑오개혁의 성과로 출현한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sup>9)</sup>이 1895년 4월 19일에 공포·시행된 이후부터 1906년 11월 13일에 칙령 제71호 「手形條例」가 공포·시행됨으로써 근대적 어음·수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까지 시기에 해당된다. 한말의 신용거래 양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 입법이 정비되지 않은 이 시기가 가지는 법제사적 특수성과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本稿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95건의 판결문들은 모두 換錢과 직·간접적으

7)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2-4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8) 往踏이란 어음 관련 사건의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발행인을 찾아가 어음을 제시하고, 당해 어음이 진정하게 발행·교부됐는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한 답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문준영, 위의 글, 249면.

9) 이 법은 한국의 근대 사법사상 획기적 의미를 갖는 법률로서, 행정사무로부터 재판사무를 분리하고 재판권을 재판소로 통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법직무정제’(1872)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174~175면.

로 관련된 것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해당 시기의 換錢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사건들을 추리니 36건 정도로 좁혀졌다.<sup>10)</sup> 그 대다수는 漢城裁判所<sup>11)</sup>와 平理院<sup>12)</sup>의 판결들이다(36건 중 한성재판소 판결 26건, 평리원 판결 8건).

本稿에서는 주제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오늘날의 환어음 법률관계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전통적 換錢과 관련하여 일본의 관습조사에 의해 인정된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換錢 법리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換錢과 관련된 전형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換錢 법리의 대체적 매커니즘을 해명해보고, ‘판결문’ 속에 산재되어 나타나는 기타 換錢 관련 용어를 정리해본다(2장). 나아가 해당 시기 換錢 법리의 성격을 더욱 선명히 부각시키기 위해, 1906년 11월 13일 공포된 칙령 제71호 「手形條例」의 내용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조례 보다 앞서 1882년 12월 11일 공포된 일본의 「爲替手形約束手形條例」도 아울러 비교 차원에서 그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3장).

10) 참고로 本稿의 분석 대상 판결문 95건 가운데 「手形條例」 공포 이후에 선고된 판결은 1907년 11월 16일 선고 한성재판소(隆熙元年 第410號) 판결 단 한 건뿐이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於音を 看做手形”이라는 문구 정도이다. 즉 전통적 於音은 「手形條例」 소정의 手形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11)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한성재판소는 개항장재판소와 더불어 1심 재판소로서 한성에 설치되었다. 이들 재판소는 관할구역 내 일체의 민형사사건 및 외국인의 본국인(조선인)에 대한 민형사사건을 재판하였다(同法 제10조, 제11조). 한성은 개항장(인천, 부산, 원산)은 아니었지만 외교공관과 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외국인의 조선인에 대한 소송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한성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를 동종의 재판소로 묶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준영, 앞의 책, 177면.

12) 1899년 5월 30일 법률 제3호 「재판소구성법 개정」이 공포되어 기존의 고등재판소 대신 평리원이 창설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평리원은 전국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을 수행하는 전국적 할권을 가지는 상급재판소가 되었다. 문준영, 앞의 책, 270면.

## Ⅱ. ‘판결문’에 나타난 換錢 법리

### 1. 현대 환어음의 법률관계 概說<sup>13)</sup>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 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의 기본 당사자는 발행인·수취인·지급인 세 명이고, 지급인이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인수) 인수인이 되어 어음채무의 주채무자가 된다. 이를 당사자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발행인

발행인은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인데, 어음의 발행이란 ‘발행인이 증권 상에 어음요건을 기재하고 이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것을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취인

수취인은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를 말한다. 수취인은 직접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으나 자기가 수령하지 않고 자기와 교체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될 자(피배서인)를 어음상에 지시할 수 있는데, 이를 ‘背書’라고 한다. 이러한 배서에 의한 어음의 양도방법은 유가증권에 인정된 고유하고 간편한 양도방법이다.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은 다시 배서에 의하여 같은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에 의하여 같은 어음을 양도하게 되어 최후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달아 있게 되는데, 이를 ‘背書의 連續’이라고 한다.

13) 이하의 서술은 李哲松, 『改訂版 어음·手票法』(博英社, 1995), 20~28면과 韓國司法行政學會, 『註釋 어음·手票法』 I(1996), 115~117면을 참고하였다.

### 3) 지급인

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인데, 발행인에 대하여 자금관계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급인은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의 지시만으로 지급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은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바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급인이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어음상에 한 경우에는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引受'라고 한다.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된다.

환어음의 지급인이나 인수인이 만기에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하면 어음관계는 종료된다. 그런데 이 때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이나 인수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인수제시), 어음과 相換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급인이 만기 전에 인수를 거절하면 소지인은 발행인 또는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배서인에 대하여 溯求權(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로서 소구의무를 지는 자들은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이다.

또한 환어음의 발행인·인수인·배서인 등이 어음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가 대신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어음행위를 '保證'이라고 하는데, 보증에 의해 어음의 신용도는 더욱 강화된다.

## 2. 일본의 관습조사에 의해 認定된 事實

일본은 1908년 5월부터 1910년 9월에 걸쳐 통감부 '不動產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을 통해 한국의 전통 관습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병합 직후인 1910년과 1912년 그리고 191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慣習調査報告書』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1909년부터 1932년까지 법원 등 관청이 조선총독부 취조국, 참서관실, 중추원 등에 대해서 조선의 관습에 관하여 조회한 사항 324건을 토대로 『民事慣習回答彙集』을 편찬하였다. 이것들은 한국에 근대법이 수용된 후 현재까지 한국의 관습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유일한 자료이다. 여기에 수록되어 관습으로 인정된 사실들은 한국의 근대적 법생활의 출발과 함께 이후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확립된 관습으로서 현재까지도 한국인의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4)</sup> 전통적 換錢 관행과 관련하여 이 자료들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慣習調査報告書』의 記述

먼저 『慣習調査報告書』의 換錢 관련 기술을 살펴보자.<sup>15)</sup> 이는 한국의 전통적 換錢 관행에 대한 일본의 최종적 평가라 할 수 있다.

於音 외에 별도로 ‘換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금전 지급을 위탁하는 手簡이다. 예컨대 부산 사람이 서울에서 수취한 금전을 부산까지 휴대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를 서울(京城)의 客主에게 임치하여 부산의 客主 명의로 換簡을 받아 부산에서 현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또 서울 상인 甲이 인천 상인 乙로부터 받을 금전이 있고 동시에 丙에게 금전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乙로 하여금 이를 丙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乙 명의의 換簡을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는 예가 있다. 換簡은 항상 封書로 하는데, 단순히 書簡만을 封入하는 경우와 書簡 외에 於音を 封入하는 경우가 있다(於音を 봉입한 경우에는 換簡에 의해 지급할 자는 於音의 수취인이 된다. 대개는 換簡 작성자가 수신인[名宛人]에게 채무가 없으면 봉입한다). 또 지급에 기한을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 기한이 정하여진 것을 有期換이라 하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無期換이라 한다.

換簡을 수취하는 자는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기한 도래 후, 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를 명의인[名宛人]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봉투에 “退”字를 쓰고 날인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換簡 수취인은 換簡 작성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비용을 갚게 할 수 있다. 그리고 換簡의 양도는 그 예가 많지는 않으나 交付讓渡

14) 鄭肯植 編譯, 『改譯版 慣習調査報告書』(韓國法制研究院, 2000), 12면.

15) 이하의 서술은 鄭肯植 編譯, 위의 책, 383~386면과 朝鮮總督府取調局, 『慣習調査報告書』(1913), 388~394면을 참고하였다.



를 인정하고, 또 양도인에게 소급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1906년(光武 10) 「手形條例」 제정 후 서울 등 繁華地에서는 다소의 환어음[爲替手形], 약속어음[約束手形], 수표[小切手]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더욱이 같은 條例에서는 於音의 유통을 금지시켰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밑줄은 필자)

먼저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 비슷한 시기에 환어음[爲替手形]과 유사한 관습을 조사하여 기록한 약칭 『臺灣私法』의 관련 기술<sup>16)</sup>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극히 간략하다는 느낌이다.<sup>17)</sup> 위 기술에서 『慣習調查報告書』의 저자는 換簡을 명시적으로 ‘환어음[爲替手形]’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의 전체 맥락과 특히 “於音 외에 별도로 ‘換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금전 지급을 위탁하는 手簡”이라는 문장을 볼 때 換簡을 오늘날의 ‘환어음[爲替手形]’과 유사한 證券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근대적 약속어음[約束手形]과 구별하기 위해 이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전통적 약속어음은 “於音”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換簡의 교부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환어음 양도방식으로서의 背書에 대한 언급은 없다. 換簡 양수인의 溯求權(償還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급인의 거절 방식으로서 ‘退’자를 적는 관습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換錢 거래에서 客主가 수행했던 역할을 특기하고 있다. 客주는 客商의 主人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主人이란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요컨대 客주는 도시에 자리 잡고 활동하던 物貨交易의 중간알선업자를 가리킨다. 그

16) 참고로 『臺灣私法』에서 환어음[爲替手形]과 유사한 관습(滙票)의 조사 결과를 수록한 부분은 60여 쪽에 이르며, 그 서술체계는 근대적 어음법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臨時臺灣舊慣調查會, 『臨時臺灣舊慣調查會第一部調查第三回報告書: 臺灣私法(第三卷 下)』(1911), 305~368면 참조.

17) 이와 관련하여 문준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어음 관행 자체가 단순 소박하여 특별히 서술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세히 조사·분석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한국의 어음 관습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데에는, 한국에서 관습조사사업이 줄속으로 진행된 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어음 관습을 상세히 정리·분석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06년 ‘수형조례’의 시행으로 시행 후 종전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장에서는 신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이었다. 구 어음 관습은 『관습조사보고서』가 완성될 즈음에는 법실무상 그다지 소용이 없는 관습으로서 취급될만했다.”(밑줄과 괄호의 삽입은 인용자). 문준영, 앞의 글, 35면.

기원이나 연혁은 명백하지 않으나 조선 말기에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객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換簡(또는 換票라고도 불리었음)의 발행·인수 업무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원격지간의 송금이나 추심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편을 제거하여 원격지간의 금융을 소통시키는 등 신용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sup>18)</sup>

2) 『民事慣習回答彙集』의 記述

이어서 『民事慣習回答彙集』의 換錢 관련 기술<sup>19)</sup>을 살펴보자.

22. 保證·於音 등에 관한 건

1911년 2월 10일 평양지방재판소 민사부 재판장 조회

1911년 2월 22일 調發 제113호 취조국장관 회답

○ 요지

1. (생략)

2. 換簡은 금전의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환어음[爲替手形]과 거의 효용이 같다.

3. 換簡은 금전의 지급에 대신하여 주고받는 것이 통례이다. 換簡으로 금전 지급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않는 때는 換簡의 소지인은 換簡 발급자에 대해서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換簡으로 금전 지급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지급에 대신하여 於音を 교부한 경우는 금전의 지급에 대신해서 約束어음[約束手形]을 교부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가 된다. 금전의 지급에 대신하여 換簡을 주고받는 경우는 조건부로 채무의 更改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조회

18) 李碩崙, 『新稿 韓國貨幣金融史研究』(博英社, 1984), 158, 161면.

19)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1933), 39~42면을 참고하였다.

## 1. (생략)

2. 조선에서 관습상 ‘出換’이라는 것이 있다. 그 법률상의 성질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甲이 乙에 대해 금전채권이 있고 丙도 甲에 대해서 역시 금전채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甲이 직접 丙에게 변제하는 대신에 丙에 대해서 換簡(甲으로부터 乙에 대한 서면으로서, 乙이 甲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권액을 丙에게 지급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을 出給하고 丙은 그것을 수취하여 乙에게 제시하였는데 乙은 그 문장의 뜻을 이해했지만 현금을 소지 않았기에 丙에게 於音을 출급하였으며, 해당 於音에는 금액 아래에 ‘甲條’라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의 채권은 丙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단 乙은 換簡을 받은 때는 반드시 丙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관습이 있는 것 같다. 위와 같은 경우에 채권양도라고 한다면 出換은 관습상 필연적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 아닌가?

3. 또한 위의 예처럼 於音 금액 아래에 ‘甲條’라고 기재한 경우에 ‘條’라는 문자는 관습상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 (해당 於音 금액의 수취인은 甲이라는 뜻을 표시한 것인가?)

## ○ 회답

## 1. (생략)

2. 換簡은 금전의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환어음[爲替手形]과 거의 같은 효용을 가진다. 그리고 換簡에 의해 지급 위탁을 받은 자는 항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受託者의 委託者에 대한 거래관계가 어떠한 지에 따른다.

3. 換簡은 금전의 지급에 대신해서 授受하는 것이 통례이다. 만약 換簡에 의해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않는 때는 換簡을 수취한 자는 換簡을 발행한 자에 대해서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전의 지급에 대신해서 換簡을 수수하는 경우는 조건부로 채무를 更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써 채권의 양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4. 換簡에 의해 금전 지급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지급에 대신해서 於音을 교부한 경우는 금전의 지급에 대신해서 약속어음[約束手形]을 교부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於音에 ‘某條’라고 기입한 것은 ‘某分’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수취한 자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교부하는 자가 備考를 위해 附記한 것에 불과하다.

(밑줄은 필자)

『民事慣習回答彙集』에서는 명시적으로 “換簡을 환어음[爲替手形]과 거의 같은 효용을 가지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換簡에 의해 지급 위탁을 받은 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換簡 수취인이 換簡 발행인에게 遡求(償還請求)할 수 있다고 하여 발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民事慣習回答彙集』 역시 오늘날의 환어음 양도방식인 背書에 대한 언급은 없다.

### 3. 전형적 사례의 분석

지금까지의 換錢과 관련된 예비적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통해 전통적 換錢 법리와 그 실제 거래양상을 검증해보도록 하자.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換錢과 관련된 전형적 사례 一群을 추출하여 그 분석을 통해 換錢 법리의 대체적 매커니즘을 해명해 보면 이어지는 논증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이하에서 다룰 사안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원심판결의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안으로, 전통적 換錢 법리의 매커니즘을 엿볼 수 있는 전형적 사례이다. 1905년 5월 11일 원심인 한성재판소에서는 장한상(張漢相)이 원고로서 피고 박기선(朴基善)을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1905년 5월 18일 상소심인 평리원에서는 원피고의 입장이 뒤바뀐 가운데 결국 박기선(朴基善)이 승소하였다. 이 두 판결과 연관되어, 원심의 訴外人이었던 김희승(金羲升)을 피고로 한 사건의 판결이 다시 한성재판소에서 1905년 7월 21일 선고됨으로써

원래의 계쟁사건은 완전히 결말을 보게 된다. 판결문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련의 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4년 음력 12월에 장한상은 인천항 객주 김희승에게 銅貨 1천 元을 임치하고 京換을 요구하였는데, 김희승은 박기선을 지급인으로 하여 1천 元 換簡을 발행하였다. 장한상은 이 換簡을 박기선에게 제시하였는데, 박기선은 해당 換簡에 대해 금전거래상 관례에 따라 그 換簡 표면(封面)에 ‘退’字를 써주고 장한상에게 돌려주었으며, 장한상은 해당 換簡을 가지고 인천항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박기선의 형인 박기영이 인천항에 내려갔을 때 장한상이 인천항 감리서에 요구하여 박기영을 잡아 가두게 하였고, 인천항의 主事가 해당 換簡의 표면(封面)에 적힌 ‘退’字를 지운 뒤 그 후면에 ‘언제[某日] 지급[出給]한다’는 취지의 글을 自意로 써 넣고 이를 장한상에게 내어주었다. 장한상은 이 換簡을 근거로 換錢 추심을 위하여 한성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당사자 간에 일련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성재판소 1905년 5월 11일 선고 제334호 환전(換錢) 소송에 관한 건  
원고 장한상(張漢相)/피고 박기선(朴基善) [원고 승소]
- 【2】 평리원 1905년 5월 18일 선고 제41호 환전(換錢) 소송에 관한 건  
원고 박기선(朴基善)/피고 장한상(張漢相) [원고 승소 → 원심 파기환송]
- 【3】 한성재판소 1905년 7월 21일 선고 제402호 환전(換錢)에 관한 건  
원고 장한상(張漢相)/피고 김희승(金羲升) [원고 승소]

소송 【1】은, 원심인 한성재판소에서 피고 박기선의 형인 박기영이 김희승이 발행한 해당 換簡에 지급을 보증하는 문구를 직접 써넣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장한상의 청구를 認容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에 피고 박기선이 불복하여 상소심인 평리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上述한 바와 같이 해당 換簡

의 지급 문구는 박기영이 자의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인천항 주사의 소행임을 인정하여 평리원에서 상소심의 원고인 박기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 소송 【2】이다. 평리원의 판결로 인하여 다시 김희승을 피고로 장한상이 자신의 換錢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여 한성재판소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 【3】이다.

2)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換錢 매커니즘

다음은 위 세 가지 소송의 판결문을 번역·발췌한 것이다.<sup>20)</sup>

【1】 한성재판소 1905년 5월 11일 선고 제334호 환전(換錢) 소송에 관한 건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환전(換錢) 동화(銅貨) 1,000원(元)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卡)과 인천항(仁港) 감리서(監署)의 조복(照覆: 회답)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所供)은, “작년 음력 12월에 인천항 객주(客主) 김희승(金羲升)의 말 가운데 ‘내가 장한상(張漢相)한테 갚을 것이 있어서 같은 달 25일 지급(出次)할 환간(換簡)의 금전 지급을 당신에게 위탁한다(付換於汝). 해당 換錢 금액을 기한 내에 마련해 보낼 터이니 만약 돈이 가지 않거든 퇴환(退換)하라고 하기에 이와 같은 취지로 서로 약정했다. 그런데 원고가 과연 지급위탁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왔으므로(付換來踏), 위의 약속한 내용을 미리 설명한 뒤에 환간(換簡)에 대하여 응답(踏答)하였는데, 돈은 오지 않았으나 기한이 되어 추심하러 왔으므로 약정에 따라 퇴환(退換)하였다. 또 내 형이 인천항 감리서에서 재판(判)을 받거나 해당 환간(換簡) 뒷면에 추서(追書)하고 다짐(納保)한

20) 사실관계와 법리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意譯하였고,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괄호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인천항 감리서의 조복(照覆)을 살펴보니, 해당 감리서에서 박기영(朴基榮)을 불러들여 심문한 전말과, 12월 그믐날 지급[出給]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換簡 뒷면[背面]에 박기영이 추서(追書)하고 화압(畫押)한 문구와, 다짐을 받고 석방한 후 박기영 형제가 기한이 이르자 도피한 정황[情節]이 조목조목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換錢 금액이 그 동생(피고 박기선)이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그 형이 어째서 추서(追書)했으며, 기한이 이르자 또 어째서 형제가 모두 도피했는가. 이로써 미루어 보면 해당 換錢 금액을 (피고가) 당연히 갚아야 함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말을 꾸미며 잡아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sup>21)</sup>

## 【2】 평리원 1905년 5월 18일 선고 제41호 환전(換錢) 소송에 관한 건

###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퇴환(退換)한 1,000원(元)을 원고에게 억지로 받아낼[勒索] 수 없다.

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三百三十四號 判決書

####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換錢銅貨 一千元을 辦償함이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卞과 仁港監署照覆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 所供은 昨年 陰十二月分에 仁港客主 金羲升言內에 吾於張漢相處에 有所報條則同月二十五日出次換簡을 當付換於汝而該錢을 限內備送矣리니 錢若不去어던 退換之意로 相約而原告가 果爲付換來踏故로 以此意預先說明後踏送矣리니 錢則不來而當限來推故로 依約退換이고 亦無矣兄之裁判於仁港監署及追書該換背面與納俵之事이다호는 今閱仁港監署照覆則自該署로 招致朴基榮호야 審問호는 顛末과 以十二月晦日出給之意로 該換背面에 基榮之追書畫押호는 句語와 捧俵放釋後朴基榮兄弟之及限逃避호는 情節이 條條分明뿐더러 該換을 其弟가 若不出給者면 其兄이 何爲追書이며 及其限日에 又何兄弟之俱避乎아 以此推之면 該錢之當報는 確有可據이거날 飾辭抵賴호는 正當이라고 호는 不可호는 因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光武九年 五月 十一日 漢城裁判所

##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卡]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년 음력 12월[臘月]에 인천항 객주 김희승(金羲升)에게 동화(銅貨) 1,000원(元)을 임치(任置)하고 경환(京換)을 요구하였기에, 김희승이 원고 박기선(朴基善)을 지급인으로 하는[抵호는] 1,000원(元) 환간(換簡)을 교부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환簡의 지급위탁 수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왔는데[來付], 원고는 김희승에게 받아야 할 돈[當捧條]이 과다하므로 해당 환簡에 대하여 금전[錢財] 거래상의 관례에 따라 환簡 표면[封面]에 ‘퇴(退)’자를 써넣어 피고에게 도로 돌려주었고, 피고는 해당 환簡을 가지고 인천항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원고의 형인 박기영(朴基榮)이 인천항에 내려갔는데, 피고가 인천항 감리서에 요구[圖囑]하여 원고의 형을 잡아 가두었고, 인천항 주사(主事)가 해당 환簡 표면[封面]의 ‘퇴(退)’자를 지워 버리고 뒷면에 ‘언제[某日] 지급[出給]한다’는 등의 말을 자의로 써넣어 피고에게 내어주었다. 그랬더니 피고가 이를 구실삼아 소송을 일삼으며[健訟] 강제로 주장하려고 한다. 무릇 환簡에 따라 환錢 금액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재(受簡)시[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아 ‘退’자를 써주었다면 해당 환錢 금액은 환簡의 발행인[發簡] 시에게 가서 추심하는 것이 이치상 당연하다[事理當然]. 그런데 인천항 재판소(= 인천항 감리서)에서 김희승에게 해당 환錢 금액의 추심을 독촉[督推]하지 않았고, 만약 해당 퇴환(退換)한 사람(=원고)에게 함부로 독촉[侵督]한다면 이는 오히려 그 억지로 추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猶係抑勒]. 그런데 하물며 퇴환한 사람[退換] 시의 형을 잡아 가두었으니 몽롱하게 일을 처리하여[朦朧做事] 기필코 억지로 추징[勒徵]하고자 한 정황이 남김없이 환히 드러났다[昭露無餘].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sup>22)</sup> (밑줄은 필자)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필자)

第四十一號 判決書

##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退換호는 一千元을 原告에게 勒索치 못호는 事

##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卡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昨年陰曆臘月分에 仁川港客主 金羲升에게 銅貨一千元을 任置호고 京換을 要호되 金羲升이 原告朴基善에게 抵호는 一千元換簡을 繕



### 【3】 한성재판소 1905년 7월 21일 선고 제402호 환전(換錢)에 관한 건

####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박기선(朴基善)에게 換錢 지급을 위탁한[付換] 동화(銅貨) 1,000원(元)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卡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동화 1,000원에 대해 박기선에게 換錢 지급을 위탁하였는데[付換] 박기선이 퇴환(退換)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당연히 갚아주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박기선에게 떠넘기고 청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sup>23)</sup>

付訖는지라 被告가 該換簡을 原告에게 來付訖즉 原告는 金羲升에게 當捧條가 夥多함으로 該換簡에 對訖야 錢財去來上 慣例를 依訖야 封面에 退字를 書填訖야 還付被告訖즉 被告가 該換簡을 帶還仁川港訖았다가 幾日後 原告兄 朴基榮이 該港에 下去訖면 被告가 該港 監理署에 圖囑訖야 原告兄을 捉囚訖고 該港主事가 該換簡封面退字를 抹倒訖고 後面에 某日出給云云之說을 自意書填하야 出給被告訖았더니 被告가 藉此健訟訖야 欲爲勒徵訖니 凡換簡을 受簡人이 不欲出錢訖야 書給退字則該錢을 發簡人에게 往推함이 事理當然인바 仁川港裁判所에서 該錢을 金羲升에게 督推치 아니訖고 設使當該退換訖人에게 侵督함지라도 猶係抑勒이어든 況退換人의 兄을 捉囚訖야스니 其朦朧做事訖야 期欲勒徵訖 情跡이 昭露無餘訖지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訖 事

光武九年 五月 十八日 平理院

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四百二號 判決書

####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訖야 朴基善處付換訖 銅貨一千元을 辦償함이 可訖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卡에 照訖야 認直事 此에 對訖야 被告는 原告處에 所報條가 有訖야 銅貨一千元을 付換於朴基善處訖았는디 朴爲退換則被告가 事當報給而反爲推諉於朴民訖고 不爲清勘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訖니 因訖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訖 事

光武九年 七月 二十一日 漢城裁判所

上述한 일련의 소송은 전통적 換錢 관행 가운데 오늘날의 환어음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위 판결문들의 주요 표현들을 통해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추출해본다.

① 환어음의 당사자인 발행인·수취인·지급인이 뚜렷이 드러난다. 발행인은 김희승이고, 수취인은 장한상이며, 지급인은 박기선이다. 【2】 소송에서는 換簡의 발행인을 “發簡人”, 지급인을 “受簡人”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무릇 換簡에 따라 換錢 금액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受簡人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아 ‘退’자를 써주었다면 해당 換錢 금액은 換簡의 발행인[發簡人]에게 가서 추심하는 것이 이치상 당연하다[事理當然]”고 하여, 지급인의 인수·지급 거절과 이 경우 수취인의 발행인에 대한 溯求權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이치상 당연하다[事理當然]”는 표현은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당시 換錢 거래가 慣習 내지는 條理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②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금전 지급을 위탁하는 것을 ‘付換’이라 하고,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위탁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즉, 인수제시)을 ‘付換來踏’ 줄여서 ‘來付’라 함을 알 수 있다. 또 지급인이 인수·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退換’이라 하고,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③ 【1】 소송에서는 환어음의 실질관계인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資金關係’와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原因關係’가 드러나 있다. 즉 김희승의 발언 가운데 “내가 장한상(張漢相)한테 갚을 것이 있어서” 부분이 바로 原因關係이고, “해당 換錢 금액을 기한 내에 마련해 보낼 터이니” 부분이 바로 資金關係인 것이다.

④ 박기선의 형인 박기영이 “해당 換簡 뒷면[背面]에 추서(追書)하고 화압(畫押)한 문구”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다. 일견 오늘날의 背書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나,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이것이 背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인 등 어음채무자의 이행책임을 保證한다는 의미인지 확연하지 않다. 형제지간이라는 특수 관계에 주목하여 전후 맥락을 찬찬히 검토해 보면 아마

도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보증 역시 어음행위로서 書面行爲이고, “追書”라는 표현은 제3자의 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⑤ 【2】 소송에서는 “京換”을 요구하였다는 표현이 나온다. 京換이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의 객주 등 앞으로 지급을 위탁하여 발행하고, 그 수취인이 上京 후 換簡을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換錢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을 가진 것이 ‘下換(下換錢)’인데, 이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 객주 등 앞으로 지급을 위탁하여 발행하고, 그 수취인이 下鄉 후 換簡을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換錢을 말한다. 각 지방마다 고유한 명칭의 下換이 존재하였다(예: 平換-평양, 松換-개성, 延換-황해도 연백, 仁換-인천, 安岳換-황해도 안악, 江景換-충청남도 강경 등).

#### 4. ‘판결문’ 속 換錢 관련 주요 빈출 용어의 정리

이상의 지식들을 통해 전통적 換錢 법리의 대체적 열개는 그려졌다고 본다. 換錢이 오늘날 환어음과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도 충분히 드러났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本稿의 분석 대상 판결문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換錢 관련 주요 빈출 용어들을 그 용례와 함께 정리한다.

##### ① 給換(=換給): 換錢 금액을 지급하는 것

- “最初換給時에 初不捧標 ㅎ고”
- “葉錢 三百兩을 給換於金基和處 ㅎ고 下鄉欲推之際에”
- “給換 ㅎ은 洪厚에게 不捧 ㅎ고 不當 ㅎ은 洪喜에게 責徵”
- “白銅貨葉八百兩을 換給 ㅎ고 以常平葉八百兩으로 下鄉報給之意爲約”
- “原告가 麟蹄居 申永順處 給換時에 踏其被告於音後換給矣”

##### ② 待換: 換簡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換錢 금액을 지급제시하고 지급인의 의사표

### 시를 기다리는 것

- “自京立錢待換則可以用換이라”
- “待換得債 ㅎ얏든 利子”

③ 無記換: 換簡의 발행인이 추후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하게 할 목적으로 滿期나 기타 요건을 白地로 하여 발행한 것(오늘날의 白地式 환어음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

- “渠之無記換三片”

### ④ 보증 관련 표현

- “居保 ㅎ換錢”
- “擔當換錢”
- “被告自願擔保 ㅎ고”
- “被告의 保薦 ㅎ으로 信而出給 人증”
- “居間擔任 ㅎ고 以下換으로 得給”

⑤ 執換: 상대방에게 換錢 거래로 금전차용을 요구하는 것

- “執換成票錢”
- “換錢을 執用成票”
- “興德結錢 二千圓을 丙午四月 上納出尺之意로 執換買米以去”

⑥ 差退: 지급거절의사(退換)를 미루는 것

- “豈至十四個日之差退며”

⑦ 推換: 換錢 거래로 지급한 돈을 추심하는 것

- “稱有全羅道下換錢 葉二千兩이라 ㅎ야 原告處에 自京執用 ㅎ얏는데 原告가 推換次로 前往樂安 ㅎ야 未免空還 ㅎ고 又往南原 ㅎ야 亦爲狼狽”

- ⑧ 換到: 換錢 금액이 도착하는 것
- “紙幣 換到之初에”
- ⑨ 換送: 換錢 금액을 보내는 것
- “紙幣 一千三十八元을 被告에게 換送 ㅎ앗더니 被告가 卽爲 捧留라가”
- ⑩ 換用: 換錢 거래로 금전을 차용하여 소비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
- “自己所用 ㅎ 換錢(=換用錢)”
  - “換錢을 得用(=錢을 得換以用=換用)”
  - “換用該郡上納錢一萬兩”
  - “遠道之人에 換을 執用 ㅎ고 于今三年에 一文도 報償치 못 ㅎ엿다”
  - “所重 ㅎ 上納錢을 換用 ㅎ고 尙未清賑”
  - “錢을 定限換用 ㅎ고(=定限成票 ㅎ 換錢)”
- ⑪ 換處: 換錢 금액 지급장소
- “換處에서 四百兩을 先給 ㅎ고”

### Ⅲ. 「手形條例」와의 比較

1868년 이른바 ‘明治維新’으로 시작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는 1882년(明治15) 12월 11일 「爲替手形約束手形條例」의 공포를 통해 근대적 어음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 역시 일본의 고유법적인 제도가 그대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즉 서구)으로부터 계수된 것이다.<sup>24)</sup> 이때로부터 약 24년 후 한국도 「手形條例」(칙령 제71호, 1906년(光武10) 11월 13일 공포)를 제정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계수된

24) 石井照久, 『新版 手形法・小切手法』(東京: 弘文堂, 1973), 7면.

근대적 어음·수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sup>25)</sup>

本稿의 분석 대상범위는 上述한 바와 같이 「手形條例」 제정 직전까지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기의 전통적 換錢 법리와 「手形條例」의 규정과는 입법적 차원에서 어떤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는지 자연스레 살펴볼 수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전통적 換錢과 「手形條例」의 규정을 비교하고, 이어서 「手形條例」의 규정과 그 前身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의 1882년 「爲替手形 約束手形條例」의 규정을 그 용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한다.

### 1. 전통적 換錢 관행과 「手形條例」 소정 爲替手形の 비교

「手形條例」는 부칙 포함 전체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을 제외하면 爲替手形·約束手形·小切手 순서로 각각 1개장씩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爲替手形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유가증권은 爲替手形과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문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편제는 큰 틀에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양자를 그 용어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종래 한국의 전통적 신용거래 관행에서는 일절 사용되지 않던 手形(테가타, てがた)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직수입하였다. 일본인 사법관들이 당시 한국의 입법·사법 사무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음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실히 증명된다. 종래 ‘換箇’·‘換’·‘換票’ 등으로 불리던 것들은 모두 일본식 용어인 爲替手形(카와세 테가타, かわせてがた)으로 관념되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세 가지 유가증권을 모두 ‘手形’으로 규정한 다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을 두었다. 手形債務, 手形要件, 消滅時效 등이 그것이다.

② 오늘날 환어음의 ‘발행’은 전통시대에는 ‘出給’, ‘執換’ 등으로 불렸으나 條例

25) 「手形條例」보다 1년 앞서 1905년(光武9) 9월 30일 탁지부령 제15호로 「約束手形條例」가 제정되었다. 이 입법은 근대적 약속어음제도를 처음 이 땅에 도입한 것이지만, 환어음[爲替手形]과 수표[小切手]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本稿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법령 자체도 약 1년 후 위 세 가지 유가증권을 종합한 「手形條例」가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고 말았다.

에서는 역시 일본식 용어인 振出(후리다시, ふりだし)을 사용하였다. 발행요건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환어음의 본질라 할 수 있는 ‘무조건적 지급 위탁’이 규정되었다(제10조 5호 “單純 支撥의 委托”)

③ 條例에서는 오늘날 환어음의 背書에 해당하는 裏書를 규정하였고, 이른바 ‘배서의 연속성’도 조문화했다(제16조).

④ 오늘날 환어음의 引受는 條例에서 擔當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만 전통적 換錢 관행에서 말하는 ‘擔當’은 맥락에 따라 引受 혹은 保證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오늘날 환어음의 支給에 해당되는 개념은 條例에서 支撥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전통적 換錢 관행에서는 지급과 관련하여 ‘出給’, ‘出次’, ‘給換’ 등 여러 가지 표현이 맥락에 따라 혼용되었음은 上述한 바와 같다.

⑥ 오늘날 환어음의 遡求 제도는 條例에서 償還請求로 표현되었으며, 배서의 연속에 따른 상환청구의 절차가 규정되었다.

⑦ 오늘날 환어음의 保證 제도는 條例에서도 역시 保證으로 표현되었다. 전통시대에는 맥락에 따라 ‘居保’·‘擔當’·‘擔保’·‘保薦’·‘擔任’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음은 上述한 바와 같다.

## 2. 「手形條例」와 일본 「爲替手形約束手形條例」의 비교

일본 「爲替手形約束手形條例」는 근대 일본 어음·수표법 역사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26)</sup> 이 條例는 통칙(제3장) 포함 전체 3개 章 47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爲替手形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約束手形(제2장)은 고작 3개조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 爲替手形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小切手(오늘날의 手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용어를

26) 일본의 근대적 手形制度는 이 「爲替手形約束手形條例」를 골자로 하여 출발하였고 1890년(明治23) 공포된 舊商法에 의해 그 완성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條例가 가지는 근대적 요소로는 인적항변의 절단, 遡求制度, 선의취득, 간편한 양도방법인 裏書制度 등이 거론된다. 武久征治, 『日本における近代的手形制度の成立に関する一考察』, 『彦根論叢』 174(滋賀県彦根市: 滋賀大学経済学会, 1975), 110면.

중심으로 韓·日 양국의 條例를 비교하면 대체로 다음의 표와 같다.

환어음 관련 韓·日 條例 비교

	韓國	日本
발행인	振出人	振出人
수취인	受領人	受取人
지급인	支撥人	支拂人
배서	裏書	裏書
양도	讓交	所有權移轉
양도인	讓交人	讓渡人
양수인	讓受人	讓受人
소지인	所持人	所持人
인수	擔當	引受
소구(상환청구)	償還請求	償還要求
보증	保證	保證
제시	呈示	呈示
환어음의 취지	支撥할 것을 委託	拂渡하게 하는 證券
자금관계 관련 조문	없음	있음
배서연속 관련 조문	있음	없음
거절증서 관련 조문	없음	있음
분실 관련 조문	없음	있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용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법령이 일본의 그것을 사실상 ‘翻譯的’으로 繼受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어음법은 그 성질상 매우 技術的인 것이고, 韓·日 양국은 漢字文化圈에 속하기에 서구의 법률용어를 번역함에 있어 이 당시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다만 수취인을 한국에서는 ‘受領人’으로, 지급인을 ‘支撥人’(韓)·‘支拂人’(日)으로, 양도를 ‘讓交’(韓)·‘所有權移轉’(日)으로, 인수를 한국에서는 ‘擔當’으로 표현하는 등의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자금관계·배서연속·거절증서·분실 관련 규정에 있어서 양국간 조문의 有無가 엇갈린다.



## IV. 맺으며

지금까지 오늘날의 환어음과 유사한 전통적 換錢 관행에 대하여, 1906년 「手形條例」가 제정되기 직전까지의 ‘구한말민사판결문’의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판결문’에는 매달 빠지지 않고 換錢 사례가 등장하며, 이 외에 於音 관련 판결문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등장한다. 거칠게 말해서 거의 모든 민사판결문들이 於音 관련 내용을 많은 적든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本稿의 주제에서 비록 ‘법적 분석’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는 했으나, 이 시기의 판결문들은 단순한 법적 개념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조선후기 經濟史나 社會史 전공자가 접근한다면 생소함이 덜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법리적 관점에서 이 과도기적 성격의 판결문들을 조명함에 있어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된 것이 換錢이었는데, 막상 연구를 시작하니 그 막막함은 예상을 훨씬 초월했다. 하지만 시대가 後期로 갈수록 판결문 속 사실관계도 더욱 구체화되고, 이유 부분도 그 법적 논변에 깊이를 더해갈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여하튼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나름의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조선후기와 한말에 성행한 換錢 관행은, ‘판결문’을 분석해 보더라도 오늘날의 환어음 법리와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하다. 법률관계의 기본 당사자로 3인이 등장하고,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의뢰한다는 취지도 동일하다. 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이 가지는 要式證券性·提示證券性·相換證券性·文言證券性·指示證券性·資格授與的 效力·免責證券性 등의 속성들을 전통적 換錢 관행은 온전히 때로는 부분적으로나마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근대적 환어음 제도의 初期的·萌芽的 성격을 충분히 具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전통적 換錢 관행이 근대적 「手形條例」 시행 이후, 더 나아가 병합 이후 일본 상법전의 의용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거쳤으며, 그에 따른 신용거래 양상은 어떻게 변화·발전해나갔는가 하

는 점은 후일의 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 ■ 참고문헌

### 1. 史料

- 臨時臺灣舊慣調查會, 『臨時臺灣舊慣調查會第一部調查第三回報告書: 臺灣私法(第三卷 下)』, 1911.  
朝鮮總督府取調局, 『慣習調查報告書』, 1913.  
鄭肯植 編譯, 『改譯版 慣習調查報告書』, 韓國法制研究院, 2000.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宋炳基 외 3인 編著, 韓末近代法令資料集, 國회도서관, 1970~1972.  
법원도서관, 구한말민사판결문 서비스(<http://khd.scourt.go.kr/main/index.jsp>)  
\_\_\_\_\_, 조선고등법원판결문 서비스(<http://khd.scourt.go.kr/JO/main/index.jsp>)

### 2. 단행본 및 논문

- 고동환, 「조선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 - 於音과 換을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0.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_\_\_\_\_,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2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柳子厚, 『朝鮮貨幣考』, 理文社, 1940.  
李碩崙, 『新稿 韓國貨幣金融史研究』, 博英社, 1984.  
李哲松, 『改訂版 어음·手票法』, 博英社, 1995.  
전성호, 「조선후기 換·於音 거래 분석(1887-1900) - 박영진 가 회계장부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8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韓國司法行政學會, 『註釋 어음·手票法』 I, 1996.  
武久征治, 「日本における近代的手形制度の成立に関する一考察」, 『彦根論叢』 第174号, 滋賀大学 經濟学会, 1975.  
石井照久, 『新版 手形法·小切手法』, 弘文堂, 1973.

<Abstract>

## A Legal Analysis on the Credit Transactions of Korea in 1890's : Focusing on the bill of exchange(*Hwanjoen*) in the Civil Cases

Kim, Baek kyou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of Korea in 1890~1910, the '*Hwanjoen*(換錢)' or '*Hwan*(換)' was very often used. The '*Hwanjoen*' is similar to a bill of exchange today. In the premodern days, the '*Eoum*(於音)' or '*Eohum*(魚驗)' was also very often used, which was similar to a promissory note today. Modern credit transactions system includes a bill of exchange and a promissory note. The credit transactions such as a bill of exchange and a promissory note is said to be the most advanced form in the history of economy. The modern credit transactions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by Japan, but before that time, it is noteworthy that in commercial credit trading practices securities that are comparable to today's bills have been widely used in Korea especially in '*Kyeseong Merchant*(開城商人)'.

The '*Hwanjoen*' practices which was very often us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n the Korean Empire in 1890~1910 are very similar to today's bill of exchange in the legal perspectives. It has three contracting parties, and a third party is entrusted with a certain amount of payment. The '*Hwanjoen*' has all the properties like today's bill of exchange in the legal perspectives.

---

\* Doctorate cours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also can be said that the ‘*Hwanjoen*’ has an air of modernity like today’s bill of exchange system.

**[Key Words]** *Hwanjoen*(換錢), a bill of exchange, *Eoum*(於音), a promissory note, The note regulation(*Suhyoungchorae*, 手形條例), *Hwankan* (換簡)